

2006년도 지방세 운영방향



박 연 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I. 지방세혁신의 좌표

2006년은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의 원년이다. 지방재정의 규모도 사용액 기준으로 이미 국가재정을 능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는 지방재정규모에 걸 맞는 총체적인 제도혁신을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지방재정법 전부개정과 지방기금법·지방계약법·공유재산법 제정 등 지방재정 4대법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 선진적인 재정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재정책임성과 성과를 교부세 배정과 연관시키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고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였으며,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세 분야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

화”의 정책기조 위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

2006년도는 또한 지방자치 10년의 토대위에 민선 4기 시대를 맞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심화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개편된 부동산 세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세원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는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지원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세 정보화 사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Ⅱ.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계 혁신

1.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 마련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지방세 제소위원회」는 “지방세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세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하여,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세목 교환,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중은 전국 평균 36.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군·구별 재정력 격차와 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북과 강남의 세원불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원 배분을 재조정하는 한편,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의 지

방세 이양과 자주세원 확충을 추진하는 총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지방 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이고, 지방자주재원의 근원은 지방세이다. 자주재원 확충, 세원불균형 완화 등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연구기능”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연구원 56명)은 국세중심의 연구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원 30명)에는 단 2명이 지방세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나 “지방행정”에 비해 취약한 “지방세” 연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지방세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연구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Ⅲ. 성과관리형 지방세정 혁신

1. 세수신장을 위한 노력 진작

지방세정의 가장 큰 임무는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상황 등 지방세 징수 여건을 정밀 분석하여 전년 대비 「지방세수 신장률」의 10% 이상 제고를 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목표 대비 징수 상황 점검을 위한 세수대책보고회를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증가

에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체납정리기법의 개발·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과학적인 세수추계모형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할 것이다.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2005. 12. 31)되어 종전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의 명칭이 「부동산교부세」로 변경되었다. 올해부터는 “거래세 완화”로 인한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거래세수 감소분도 보전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세 운영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세수신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지방세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부동산세제가 연차적으로 개편되고 세부담이 변동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능동적·예방적인 고객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도세와 시·군세, 광역시세와 구세를 구분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쉽고 편안하게 지방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종합적·전문적인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연간 세수규모 35조, 과세건수 1억6백만 건에 달하므로 국세와 같은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단일의 대표 상담창구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

하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상담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도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의 모범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 참여하는 상생·협력의 운영모델을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은 실무경력이 축적된 전문상담요원을 선발·파견하고, 중앙은 전국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능동적인 고객관리 기법을 도입한 세무상담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실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전화·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3.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세무조사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세무조사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면 세무조사의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리고 방문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

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4. 지방세혁신 포털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대처하고 지방세 분야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된 지방세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개발을 올해 초에 마무리하고, 2007년까지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시·군·구, 시·도, 행정자치부를 연결하는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세 운영은 시군구·시도·행정부의 통합시스템 기반 위에서 과세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건교부, 법원(등기소) 등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세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납체계를 표준화하고 행정망과 금융망을 연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민원 등의 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IV. 맺음 말

지방재정은 올해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성장하는 지방재정의 규모에 부응하여 재정의 효율과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재정의 성과를 창출하고 “신지방자치 시대”로 비상할 수 있는 총체적인 혁신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원 확충과 세원불균형 완화, 재정조정제도 개선 등 자치와 분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세제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여 납세협력을 제고하는 총체적인 지방세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목표설정과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세정과 납세자간의 대화와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